

의안번호	제244호
------	-------

발의연월일

2024. 1. 3.

예산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

발의자
임종용 의원 외 2인

예산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

(임종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44호
----------	-------

발의연월일 : 2024년 1월 3일
발의자 : 임종용, 김영진, 박중수
의원 (3인)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지역 농업·농촌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농업인 양성을 위해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경쟁력 향상 및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군수의 책무 및 다른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제4조)
- 다. 교육대상 및 교육생 선발(안 제5조 ~ 제6조)
- 라. 교육의 범위 및 경비 지원, 교육운영(안 제7조 ~ 제9조)
- 마. 강사의 위촉 및 강사수당(안 제10조 ~ 제11조)
- 바. 교육이수자 및 교육이수자 우대(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1】
 - 「농촌진흥법」 제1조, 제2조, 제19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다. 기타

-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2024. 1. 4.~ 1. 11. [8일간]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붙임 2】
- 4) 성별영향평가 : 【붙임 3】

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지역 농업·농촌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농업인 양성을 위해 예산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교육”이란 예산군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모든 농업교육 과정을 말한다.

1. 장기교육 : 예산농업인대학 등
2. 단기교육 :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귀농귀촌교육, 품목별교육, 농산물가 공창업교육, 농기계사용교육, 농업인 정보화 교육, 그 밖의 농업과 관련된 교육 등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인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농업인교육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산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교육 대상)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거나 군으로 귀농·귀촌 예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농업인교육 대상으로 한다.

1. 농업인

2.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

3. 그 밖에 농업인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6조(교육생 선발) ① 군수는 농업인교육의 각 과정별 입학전형 및 학사 규정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생을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군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공지한다.

③ 농업인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입학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을 고려하여 교육생을 선발한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교육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기일 안에 입학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불이행 시 군수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단기교육은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교육의 범위) 군수는 농업인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1. 농축산물 · 농식품의 생산성 향상, 안전성, 수확 후 관리, 가공 · 이용, 유통 · 판매, 부가가치 향상 등에 관한 교육

2. 농업 · 농촌 생활환경에 관한 교육

3. 농기계 · 농약 · 비료 등 농자재의 사용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농업발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교육

제8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농업인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일부를 교육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9조(교육 운영) ① 교육과정은 제5조의 교육대상 또는 농업관련단체 등에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한다.

② 교육방법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기교육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농업인교육에 전문 기자재 확보 및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전문 교육기관 또는 대행업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강사의 위촉) ① 군수는 농업인교육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1.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

2. 농촌진흥청 소속 농촌지도직 또는 농업연구직 공무원

3. 그 밖에 교육과정에 맞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1조(강사수당)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교육이수 및 교육이수자 우대) ① 교육과정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이 인정된 교육생에게는 교육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자는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업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기교육에 해당하는 교육이수자 중 교육운영에 공헌하거나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교육생을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 **농촌진흥법**[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 나. 품종개발 및 농업유전자원의 수집·보존·활용과 이에 관련된 조사·연구
 - 다. 농축산물·농식품의 생산성 향상, 안전성, 수확 후 관리, 가공·이용, 부가가치 제고 등에 관한 조사·연구
 - 라. 농업 및 농업환경의 유지·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 마. 농업·농촌 생활환경, 문화의 보존 및 여성 농업인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 바. 농업생물자원의 활용을 위한 첨단기술 연구개발
 - 사. 농기계·농약·비료 등 농자재의 표준규격 설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 아.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 “농촌지도사업”이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

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 나. 농업경영체의 경영 진단 및 지원
 - 다.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 개선 지원
 - 라. 농업후계인력, 농촌지도자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
 - 마.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 지도
 - 바.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술 지도
 - 사. 그 밖에 농촌지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4.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 나.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 다. 농업관련 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교육훈련
 - 라.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5. “국제협력사업”이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 등과 협력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국제기구 및 국제연구기관 등과의 농업기술에 관한 공동연구개발·보급사업
 - 나. 외국의 정부, 대학, 민간기구 등과의 농업기술에 관한 공동연구개발·보급사업
 - 다. 그 밖에 국제협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제19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불임 2】

예산군 농업인 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주요내용)

- 예산의 지원 등(안 제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으로 예상됨.

4. 작성자 : 임종용 의원

【불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예산091							
정책명	예산군 농업인 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부서명	의회사무과						
	담당자명	김미경	전화번호	041-339-707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11월 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의회사무과)	'예산군 농업인 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한 사항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예산군 농업인 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가족지원과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용미/041-339-7912)								
의회사무과장 귀하								